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96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
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, 제6호 중
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
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감사) ① ~ ② (생략) <u>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</u></p>	<p>제10조(감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<삭제></u></p>
<p>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<u>자</u> 2. <u>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<u>자</u>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<u>자</u> 5.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<u>자</u> 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<u>의하여</u>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<u>자</u> 7.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<u>자</u> 	<p>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사람</u> 2. <u>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</u> 3. ----- <u>사람</u> 4. ----- 5. ----- 6. ----- <u>사람</u> 7. ----- <u>사람</u>
<p>제14조(이사회) ① ~ ② (생략) <u>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되며,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u></p>	<p>제14조(이사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<u>④ <삭제></u></p> <p><u>⑤ <삭제>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35조(과태료) 구청장은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을 따른다.</u></p>	<p><u>제35조 <삭제></u></p>